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36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11. 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536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8호, 2025.10.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저감 표시 대상 식품 유형을 확대하고, 평균값 미제시 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균값을 산출·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 유형 확대 및 제외 대상 명확화 (제3조 및 별표 2)

나. 영업자의 평균값 산출·적용 근거 및 신뢰성 확보 절차 마련(제4조 제2항 및 제3항)

다. 식약처 평균값 신규·변경 시 적용 유예기간 마련(제4조 제4항)

3. 의견 제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8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 - 536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모든 식품 유형으로 하며, 세부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식품 유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유형
2. 주로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식품 유형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나트륨·당류에 대한 별도의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고 있는 식품 유형
4. 제품의 종류・특성이 다양하여 대표성 있는 평균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식품 유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표시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값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산출한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한 해당 식품과 식품 유형, 제조 방법, 성상이 동일한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어 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평균값의 적정성에 대해 식품영양, 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③ 영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평균값이 새로 게시되거나 변경되어 게시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평균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새로 게시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가 산출한 평균값

2. 변경하여 게시한 경우: 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평균값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표시 내용의 실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한 영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제3조 관련)

분류	식품 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건면	국물형* (조미식품 포함)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비국물형** (조미식품 포함)	비빔냉면, 쫄면 등
		기타 건면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햄버거	둥근 빵에 육류,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치즈버거 등) * 밥버거 제외
		샌드위치	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 달걀, 치즈,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 랩 샐러드, 토르티야 등 제외
	즉석조리식품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고기손만두, 채소 만두 등)
	빵류	피자	반죽 위에 육류, 치즈, 채소, 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
		베이글	밀가루, 이스트 반죽을 끓는 물에 데치거나 굽는 링 모양의 제품

분류	식품 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바게트	밀가루, 이스트, 소금 등을 넣어 구운 바삭한 겉껍질이 있는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제품
		치아바타	밀가루, 이스트, 소금, 올리브오일 등을 넣어 기다랗고 넓적하게 구운 제품
		크로와상	밀가루, 이스트, 소금, 버터 등을 넣어 반죽에 버터가 교차되는 층을 만든 뒤 초승달 모양으로 성형해 구운 제품
		식빵	밀가루, 이스트 등을 반죽해 사각형 틀에 넣어 구운 제품
		모닝빵	밀가루, 이스트, 버터, 우유 등을 넣어 구운 일반적으로 작고 둥근 형태의 제품
		곡물빵	밀가루에 통곡물 또는 가공된 곡물(귀리, 호밀, 보리, 현미, 기장, 퀴노아 등)을 혼합하여 구운 제품
		디저트류	까눌레, 다쿠아즈, 마카롱, 만쥬, 브라우니, 슈, 초코파이, 카스텔라, 케이크, 파이·타르트, 팬케이크, 크레이프, 호두과자, 휘낭시에, 기타빵 등
		일반 빵류	단팥빵, 앙금빵, 도넛, 마들렌, 머핀, 모카빵, 소보로빵, 크림빵, 스콘, 호떡, 호빵, 찐빵, 찰빵, 풀빵, 발효빵 등
		식사빵류	또띠아·난, 소금빵, 치즈빵, 크로켓, 토스트, 샌드위치, 포카치아, 프레즐, 피자빵, 핫도그 등
	식육추출 가공품	국, 탕	사골우거지국, 소고기미역국, 육개장, 갈비탕 등 * 육수로 사용되는 제품, 국밥 제외
		찌개, 전골	차돌된장찌개, 돼지고기김치찌개, 곱창전골, 불고기전골 등 *육수로 사용되는 제품, 국밥 제외
		기타 식육추출가공품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어육소시지	간식용	스틱·봉 형태 등으로 개별 또는 소포장되어 그대로 또는 간단히 가열하여 섭취하도록 제조한 제품
		조리·반찬용	절단·가열·조리하여 반찬이나 요리 재료로 주로 사용하는 제품(반찬소시지, 김밥속햄 등)
	떡류	떡국(국물포함 제품에 한함)	떡과 스프 등으로 구성하여 함께 섭취하는 제품
		떡볶이(소스포함 제품에 한함)	떡과 소스 등으로 구성하여 함께 섭취하는 제품
		기타 떡류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가공두부	유부·초밥용	두부를 얇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유부 및 조미한 유부 등의 제품

분류	식품 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기타 가공두부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소스	비빔·양념용 소스	면류, 떡류 등 식품에 양념 또는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소스(떡볶이 소스, 비빔면·쫄면용 소스 등)
		드레싱·찍어 먹는 소스	샐러드 등 식품에 곁들이거나 직접 첨가하여 섭취하는 소스(샐러드 드레싱, 칠리소스, 갈릭소스, 머스타드소스 등)
		기타 소스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짜장·커리 등 덮밥류 소스, 토마토·오일·크림 등 파스타 소스류 등)
	조림류	당조림	앙금류, 고구마맛탕 등 당류를 사용하여 조리·농축한 제품
		무침(나물)류	채소·산나물·해조류 및 기타 원재료를 양념하여 무친 제품과 이들을 혼합한 제품
		조림류	장조림, 콩·연근·우엉·생선·두부조림 및 멸치·진미채·어묵 등 양념하여 조리거나 볶은 제품
	알가열제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조린 것	양념, 간장 등을 더해 조리·조미한 계란, 메추리알 등 제품(장조림, 계란장, 조미훈제란, 양념란, 염지란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알을 깨뜨려 혼합한 후 가열·성형한 계란 등 조리제품(계란말이, 지단, 오믈렛 등)
		기타 알가열제품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구운란, 삶은란, 비조미 훈제란 등)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빵류	카스텔라	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 설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
		케이크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
		머핀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
		파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 과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
		식사빵류	식빵, 바게트, 베이글, 치아바타, 또띠아·난, 모닝빵, 소금빵, 피자빵 등 주식 또는

분류	식품 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 형태의 제품
		일반 빵류	단팥빵·앙금빵, 도넛, 소보로빵, 크림빵, 스콘, 크루아상, 호떡, 호빵·찐빵 등 당류·앙금·크림 등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 형태의 제품
		디저트류	까눌레, 마들렌, 브라우니, 쿠키, 초코파이, 휘낭시에 등 반죽 등을 성형하여 굽거나 구운 후 크림·초콜릿 등을 조합한 과자 형태의 제품
		기타빵	비스킷, 스낵과자, 모나카, 푸딩 등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아이스밀크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
	샤베트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빙과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커피	액상커피 (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액상커피 (유가공품 미함유 단맛 제품에 한함)	당류, 감미료 등 사용하여 단맛을 부여한 커피(스위트 아메리카노, 바닐라향 커피 등)
		분말커피 (단맛 제품에 한함)	당류, 감미료 등 사용하여 단맛을 부여한 분말·고형 형태의 커피(커피믹스, 스위트 커피 분말 등)
		기타 커피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유산균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초콜릿	-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인 것
	밀크초콜릿	-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2%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
	준초콜릿	-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7% 이상인 것
	초콜릿가공품	초코과자	초콜릿가공품 세부분류인 '초콜릿 형태'에

분류	식품 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작은 크기의 견과류, 과자 등이 포함된 제품 (크런치 등)
		초콜릿 형태	코코아고형분 함량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코릿, 준초콜릿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형태적으로 초콜릿과 유사한 제품
	과자	스낵, 크래커, 스콘	곡류·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팽화·유탕·굽기 등의 공정을 거친 스낵과자, 크래커, 스콘 형태의 제품
		비스킷, 쿠키, 마카롱, 웨이퍼	곡류, 당류, 유지류 등을 주원료로 반죽·성형·굽기 등의 공정을 거친 비스킷, 쿠키, 마카롱, 웨이퍼 형태의 제품
		기타 과자류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과자 제품
	소스	비빔·양념용 소스	면류, 떡류 등 식품에 양념 또는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소스(떡볶이 소스, 비빔면·쫄면용 소스 등)
		드레싱·찍어 먹는 소스	샐러드 등 식품에 곁들이거나 직접 첨가하여 섭취하는 소스(샐러드 드레싱, 칠리소스, 갈릭소스, 머스타드소스 등)
		기타 소스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짜장·커리 등 덮밥류 소스, 토마토·오일·크림 등 파스타 소스류 등)
	곡류가공품	시리얼류	시리얼 및 시리얼바 등 형태의 제품
		기타 곡류가공품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1) (국물형) ----------

2) (비국물형) ----------

3) (빵류, 과자, 떡류 등 세부분류)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 형태, 원재료, 성상, 제조 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

4) 상기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유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평균값의 적용 및 산출은 제4조에 따른다.

[별표2]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외 식품 유형(제3조 관련)

구분	제외 식품 유형
가.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유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유형
나. 주로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식품 유형	원액두유, 고춧가루, 실고추, 찐쌀,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산양유, 버터유,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어육살, 건어포, 한천,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 가공화분
다. 나트륨·당류에 대한 별도의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고 있는 식품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 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라. 대표성 있는 평균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식품 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루아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사.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 아.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 2. 당류 저감 표시 가. ~ 다. (생 략)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 하.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대상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모든 식품 유형으로 하며, 세부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식품 유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유형 2. 주로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식품 유형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나트륨·당류에 대한 별도의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고 있는 식품 유형 4. 제품의 종류·특성이 다양하여 대표성 있는 평균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식품 유형
제4조(표시기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	제4조(표시기준) ① ---------- ---------- ----------

를 사용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값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산출한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1.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한 해당 식품과 식품 유형, 제조 방법, 성상이 동일한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어 산출할 것 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평균값의 적정성에 대해 식품영양, 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신 설>	③ 영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평균값이 새로 게시되거나 변경되어 게시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적용할 수 있다. 1. 새로 게시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가 산출한 평균값 2. 변경하여 게시한 경우: 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평균값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5조(표시 내용의 실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한 영업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생 략)	제6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생 략)
제6조(재검토 기간) ---------- -------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	제7조(재검토 기한) ---------- ------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 ----------.
[별표] ---------- -------(제3조 관련)	[별표 1] ----------(제3조 관련)

분류	식품 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건면 (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국물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비국물형	비빔냉면, 쫄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즉석섭취식품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즉석섭취식품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즉석섭취식품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둥근빵에 육류,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치즈버거 등) *밥버거 제외
	즉석섭취식품	샌드위치	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

분류	식품 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건면	국물형* **(조미식품 포함)**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건면
		비국물형** **(조미식품 포함)**	비빔냉면, 쫄면 등
		기타 건면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즉석섭취식품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즉석섭취식품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즉석섭취식품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즉석섭취식품	햄버거	둥근빵에 육류,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치즈버거 등) *밥버거 제외
	즉석섭취식품	샌드위치	얇게 썬 빵 조각 사이에 소스 등을 바르고 육류, 달걀, 치즈, 채소 등을

			달걀, 치즈, 채소 등을 끼워 만든 제품 *랩 샐러드, 토르티야 등 제외
	즉석조리식품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즉석조리식품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 (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즉석조리식품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 (고기손만두, 채소만두 등)
	빵류	피자	반죽 위에 육류, 치즈, 채소, 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
		베이글	밀가루 반죽을 끓는 물에 데치거나 굽는 링 모양의 제품
		바게트	밀가루, 이스트, 소금 등을 넣어 구운 바삭한 겉껍질이 있는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제품
		치아바타	밀가루, 이스트, 소금 등을 넣어 기다랗고 넓적하게 구운 제품
		크로와상	반죽, 버터가 교차되는 층을 만든 뒤 초승달 모양으로 성형해 구운 제품
		식빵	밀가루, 이스트 등을 반죽해 사각형 틀에 넣어 구운 제품
		모닝빵	버터, 우유 등을 넣어 구운 일반적으로 작고 둥근 형태의 제품
		곡물빵	밀가루 반죽에 통곡물 또는 가공된 곡물(예: 귀리, 호밀, 보리, 현미, 기장, 퀴노아 등)을 혼합하여 구운 제품
	식육추출 가공품	국, 탕	사골우거지국, 소고기미역국, 육개장, 갈비탕 등 *육수로 사용되는 제품, 국밥 제외
		찌개, 전골	차돌된장찌개, 돼지고기김치찌개, 곱창전골, 불고기전골 등 *육수로 사용되는 제품, 국밥 제외
	어육소시지 (간식용 제품에 한함)	-	*반찬용 소시지 제외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끼워 만든 제품 *랩 샐러드, 토르티야 등 제외
	즉석조리식품	국, 탕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즉석조리식품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 (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즉석조리식품	도시락 (정찬형)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 끼 식사 제품 *덮밥, 비빔밥, 국밥형, 조리면, 밥이 없는 형태 등 제외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 (고기손만두, 채소만두 등)
	빵류	피자	반죽 위에 육류, 치즈, 채소, 소스 등을 얹어 구운 제품
		베이글	밀가루 반죽을 끓는 물에 데치거나 굽는 링 모양의 제품
		바게트	밀가루, 이스트, 소금 등을 넣어 구운 바삭한 겉껍질이 있는 길쭉한 막대기 모양의 제품
		치아바타	밀가루, 이스트, 소금 등을 넣어 기다랗고 넓적하게 구운 제품
		크로와상	반죽, 버터가 교차되는 층을 만든 뒤 초승달 모양으로 성형해 구운 제품
		식빵	밀가루, 이스트 등을 반죽해 사각형 틀에 넣어 구운 제품
		모닝빵	버터, 우유 등을 넣어 구운 일반적으로 작고 둥근 형태의 제품
		곡물빵	밀가루 반죽에 통곡물 또는 가공된 곡물(예: 귀리, 호밀, 보리, 현미, 기장, 퀴노아 등)을 혼합하여 구운 제품
		디저트류	**까눌레, 다쿠아즈, 마카롱, 만쥬, 브라우니, 슈, 초코파이, 카스텔라, 케이크, 파이·타르트, 팬케이크, 크레이프, 호두과자, 휘낭시에, 기타빵 등**
		일반 빵류	**단팥빵, 앙금빵, 도넛, 마들렌, 머핀, 모카빵, 소보로빵, 크림빵, 스콘, 호떡, 호빵, 찐빵, 찰빵, 풀빵, 발효빵 등**
		식사빵류	**또띠아·난, 소금빵, 치즈빵, 크로켓, 토스트, 샌드위치, 포카치아, 프레즐, 피자빵, 핫도그 등**
	식육추출	국, 탕	사골우거지국, 소고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품 유형이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에 정하여지지 않은 가공유류(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빵류	카스텔라	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 설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
		케이크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
		머핀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
		파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 과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아이스밀크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
	샤베트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빙과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커피	액상커피 (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유산균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초콜릿	-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인 것
	밀크초콜릿	-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2%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

	가공품		미역국, 육개장, 갈비탕 등 *육수로 사용되는 제품, 국밥 제외
		찌개, 전골	차돌된장찌개, 돼지고기김치찌개, 곱창전골, 불고기전골 등 *육수로 사용되는 제품, 국밥 제외
		기타 식육추출가공품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어육소시지	**간식용**	**스틱·봉 형태 등으로 개별 또는 소포장되어 그대로 또는 간단히 가열하여 섭취하도록 제조한 제품**
		조리·반찬용	**절단·가열·조리하여 반찬이나 요리 재료로 주로 사용하는 제품 (반찬소시지, 김밥속햄 등)**
	떡류	**떡국(국물포함 제품에 한함)**	**떡과 스프 등으로 구성하여 함께 섭취하는 제품**
		떡볶이(소스포함 제품에 한함)	**떡과 소스 등으로 구성하여 함께 섭취하는 제품**
		기타 떡류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가공두부	**유부·초밥용**	**두부를 얇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유부 및 조미한 유부 등의 제품**
		기타 가공두부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소스	**비빔·양념용 소스**	**면류, 떡류 등 식품에 양념 또는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소스(떡볶이 소스, 비빔면·쫄면용 소스 등)**
		드레싱·찍어 먹는 소스	**샐러드 등 식품에 곁들이거나 직접 첨가하여 섭취하는 소스(샐러드 드레싱, 칠리소스, 갈릭 소스, 머스타드소스 등)**
		기타 소스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짜장·커리 등 덮밥류 소스, 토마토·오일·크림 등 파스타 소스류 등)**
	조림류	**당조림**	앙금류, 고구마맛탕 등 당류를 사용하여 조리·농축한 제품
		무침(나물)류	채소·산나물·해조류 및 기타 원재료를 양념하여 무친 제품과 이들을 혼합한 제품
		조림류	장조림, 콩·연근·우엉·생선·두부조림 및 멸치·진미채·어묵 등 양념하여 조리거나 볶은 제품
	알가열제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조린 것**	**양념, 간장 등을 더해 조리·조미한 계란, 메추리알 등 제품(장조림, 계란장, 조미 훈제란, 양념란, 염지란 등)**
		식품 또는	**알을 깨뜨려 혼합한 후**

	준초콜릿	-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7% 이상인 것
	초콜릿가공품	초코과자	초콜릿가공품 세부분류인 '초콜릿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초콜릿 형태	코코아고형분 함량 등 미달로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코릿, 준초콜릿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형태적으로 유사한 제품

1) (국물형) ----------

2) (비국물형) ----------

3) (빵류 세부분류) ----------

<신설>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가열·성형한 계란 등 조리제품(계란말이, 지단, 오믈렛 등)**
		기타 알가열제품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구운란, 삶은란, 비조미 훈제란 등)**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품 유형이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에 정하여지지 않은 가공유류(바나나맛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빵류	카스텔라	거품을 낸 달걀에 밀가루, 설탕 등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스펀지 형태의 속 모양을 가진 제품
		케이크	밀가루, 달걀, 버터, 우유, 설탕 등을 넣어 구운 제품 (롤케이크, 파운드케이크 등)
		머핀	밀가루, 달걀, 우유, 설탕, 베이킹파우더 등을 넣어 컵 모양으로 구운 제품
		파이	밀가루 반죽 사이에 육류, 과일 등을 채워 구운 제품
		식사빵류	식빵, 바게트, 베이글, 치아바타, 또띠아·난, 모닝빵, 소금빵, 피자빵 등 주식 또는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 형태의 제품
		일반 빵류	단팥빵·앙금빵, 도넛, 소보로빵, 크림빵, 스콘, 크루아상, 호떡, 호빵·찐빵 등 당류·앙금·크림 등을 사용하여 단맛을 낸 형태의 제품
		디저트류	까눌레, 마들렌, 브라우니, 쿠키, 초코파이, 휘낭시에 등 반죽 등을 성형하여 굽거나 구운 후 크림·초콜릿 등을 조합한 과자 형태의 제품
		기타빵	비스킷, 스낵과자, 모나카, 푸딩 등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
	아이스밀크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

			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
	샤베트	-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
	빙과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커피	액상커피 (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액상커피 (유가공품 미함유 단맛 제품에 한함)	**당류, 감미료 등 사용하여 단맛을 부여한 커피(스위트 아메리카노, 바닐라향 커피 등)**
		분말커피 (단맛 제품에 한함)	**당류, 감미료 등 사용하여 단맛을 부여한 분말·고형 형태의 커피(커피믹스, 스위트 커피 분말 등)**
		기타 커피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유산균음료	-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
	초콜릿	-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인 것
	밀크초콜릿	-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2%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
	준초콜릿	-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7% 이상인 것
	초콜릿가공품	초코과자	초콜릿가공품 세부분류인 '초콜릿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초콜릿 형태	코코아고형분 함량 등 미달로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코릿, 준초콜릿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형태적으로 유사한 제품
	과자	**스낵, 크래커, 스콘**	곡류·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팽화·유탕·굽기 등의 공정을 거친 스낵과자, 크래커, 스콘 형태의 제품
		비스킷, 쿠키, 마카롱, 웨이퍼	곡류, 당류, 유지류 등을 주원료로 반죽·성형·굽기 등의 공정을 거친 비스킷, 쿠키, 마카롱, 웨이퍼 형태의 제품

		기타 과자류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과자 제품
	소스	비빔·양념용 소스	면류, 떡류 등 식품에 양념 또는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소스(떡볶이 소스, 비빔면·쫄면용 소스 등)
		드레싱·찍어 먹는 소스	샐러드 등 식품에 곁들이거나 직접 첨가하여 섭취하는 소스(샐러드 드레싱, 칠리소스, 갈릭 소스, 머스타드소스 등)
		기타 소스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짜장·커리 등 덮밥류 소스, 토마토·오일·크림 등 파스타 소스류 등)
	곡류가공품	시리얼류	시리얼 및 시리얼바 등 형태의 제품
		기타 곡류가공품	그 밖에 다른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1) (국물형) ----------

2) (비국물형) ----------

3) (빵류, **과자, 떡류** 등 세부분류) 제품명을 기본으로 분류하되, 형태, 원재료, 성상, 제조 방법 등 제품별 특징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세부 분류 적용

4) 상기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유형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평균값의 적용 및 산출은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별표 2]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외 식품 유형(제3조 관련)

<신 설>

구분	제외 식품 유형
가.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유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유형
나. 주로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되는 식품 유형	원액두유, 고춧가루, 실고추, 찐쌀,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산양유, 버터유,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어육살, 건어포, 한천,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 가공화분
다. 나트륨·당류에 대한 별도의 제조·가공기준 또는 규격을 정하고 있는 식품 유형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 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라. 대표성 있는 평균값을 산출하기 어려운 식품 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